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41

2020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1.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2018.12.18. 개정, 2019.12.19.시행)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된 가운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내용 및 수행 주체 (안 제7조, 제8조)

나.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주체 및 시기 (안 제9조)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안 제11조)

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안 제13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41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시키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요자산으로 인

식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도 규모의 거대화 및 보여주기식 디자인 등을 적용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공건축물은 막대한 예산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및 지역의 특성과 어울리지 못한 채 획일적 형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의 비효율화, 지역사회의 요구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서는 건축기획과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의 개정(2018 .12.18.일부개정, 2019.12.19.시행)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위임사항에 따른 조례 등의 정비기간을 이유로 시행시기가 1년간 유예된바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건축물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설계공모의 기준 및 건축과정에 설

계자를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축기획 내용 및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9조는 사전검토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사전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축기획에 관한 의견(안 제7조)

[표-1] 공공건축물 관리체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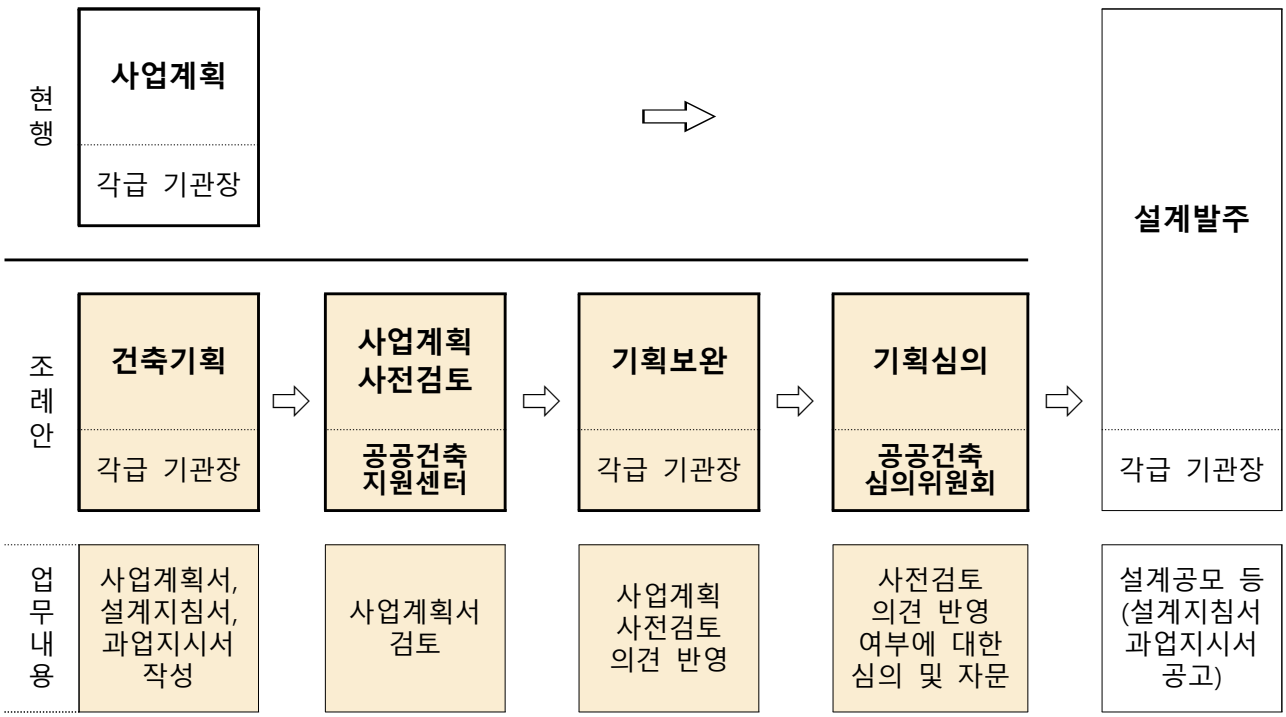

○ 안 제7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립 추진시 각급 기관의 장에게 건축기획[1] 업무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이때

도시, 녹지, 문화재 등 관련분야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공공건축물의 설립은 표준화된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비 총액에 따라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유재산심의,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거쳐 설계를 발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건축서비스법'의 개정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립은 사업추진 및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2)]

안 제7조 역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등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관한 의견(안 제12조, 안 제13조)

○ 안 제12조는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건축서비스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공공건축

---

1)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건축서비스법」제2조제1항제1의2호)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원센터[3]가 건축기획 업무와 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4] 이러한 공공건축 업무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5]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3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승인[6]을 받았는바, 현재 '교육행정국-교육시설안전과-교육공간디자인팀'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재정 지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서비스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례로 규

---

3) 국토교통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auri)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14.6월)하였음.

4)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3.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 승인 알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137,(2020.3.24.)

정하도록 위임되었는바,[7]

-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 지원 및 자문위원단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4)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에 관한 의견(안 제9조)

○ 안 제9조는 각급기관의 장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센터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고(제1항), 센터는 이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3항에서는 그 제출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규정은 '건축서비스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법적합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건축서비스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사전검토 대상사업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할 것이나,

동 조례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건축서비스법' 제22조의2[8])인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

7)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공공건축 사업(‘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을 사전검토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센터의 사전검토 대상이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보다 확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재 ‘건축서비스법’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대상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을 설계비 추정가격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공건축 사업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법령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축서비스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삭제 <2018. 12. 18.>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이와 같은 상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3월 31일자 보도자료[9]를 통해 센터의 사전검토 대상을 법적 기준인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이 아닌 5천만원 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바,

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건축서비스법'제21조의2제6항), 센터의 사전검토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센터의 역할 또한 확대시켜 공공건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안 제10조, 안 제11조)

○ 안 제10조는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9) '서울시교육청 시·도교육청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20.3.31.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규정은 '건축서비스법' 제22조의3[10]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법적합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서비스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각급 기관의 장”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한 설계발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우수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적용대상
2. 추정설계비에 따른 기준 및 절차
3.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4. 그 밖에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등의 배치·공간·시설계획의 주안점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공사시행계획
6.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각급 기관의 장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녹지, 문화재,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2. 영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각급 기관의 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④ 교육감은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2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장이 사전심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시기에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심의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전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축기획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9조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